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 지원

별표 1 중 총계 “681”을 “682”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장관 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다음에 “청년보좌역(5급 상당) 1”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88”을 “689”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다음에 “청년보좌역(5급 상당) 1”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⑥ (생 략) ⑦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 (생 략) <u><신 설></u> 31. ~ 35. (생 략) ⑧ ~ ⑰ (생 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30. (현행과 같음) <u>30의2.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u> <u>문단의 운영 지원</u> 31. ~ 35. (현행과 같음) ⑧ ~ ⑰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681	.	682	+1	
별정직	.	계	4	.	5	+1	
청년보좌역(5급 상당)	.		<신 설>	.	1	+1	
	.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88</u>		<u>689</u>	+1	
	.		.		.		
	.		.		.		
별정직 계			<u>4</u>		<u>5</u>	+1	
	.		.		.		
	.		.		.		
<u>청년보좌역(5급 상당)</u>			<u><신 설></u>		<u>1</u>	+1	
	.		.		.		
	.		.		.		